

#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 의원 대표발의

의안번호 : 9808

발의연월일 : 2014. 3. 20.

발의자 : 김희정 · 정갑윤 · 유기준 · 윤명희 · 김영우

황주홍 · 김정훈 · 이한성 · 이만우 · 이명수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휴양시설에서 개최된 신입생활영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강당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·부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음.

이에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,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2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**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**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학생의 안전관리)

- ① 학교의 장은 그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교육활동(제12조에 따른 학생자치활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있어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시설·장비의 점검 및 개선,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,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칙에 관한 경과조치) 학교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1조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**표 1 | 신 · 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1조의2(학생의 안전관리)</p> <p>① 학교의 장은 그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교육활동(제12조에 따른 학생자치활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있어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시설·장비의 점검 및 개선,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,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